
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학교의 장이 정서·행동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상담·치료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, 이에 대한 보호자의 협조의무를 규정하며, 현저한 위기학생의 경우 상담 또는 치료를 받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(안 제18조의5 신설).
-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되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함(안 제19조의 2제1항).
- 긴급한 위험상황에 교원이 학생의 행위에 대해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(안 제20조의2).
- 학생이 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교육하는 “개별학생교육지원”의 근거를 마련함(안 제20조의4 신설).
-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과 그 후보자가 당연퇴직 사유 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

아 경찰관서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,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조회를 위한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함(안 제31조의3 신설).

II. 검토의견

1. 중복 조항의 병합(안 제20조의2제7항 및 안 제20조의4제7항)

안 제20조의2제7항과 제20조의4제7항에서는 현행 학생생활지도에 적용되는 「아동복지법」상 아동학대 금지¹⁾ 조항 적용 배제를 각각 “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”와 “개별학생교육지원”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음.

두 조항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일한 법률조항에 대한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, 입법의 경제성 측면에서 한 조로 병합하고 적용 배제의 대상 행위를 각호로 나열하는 방식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.

현행	개정안	수정의견
법률 제20566호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제20조의2(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) ① (생략)	법률 제20566호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제20조의2(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) ① (현행과 같음)	법률 제20566호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제20조의2(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) ① (개정안과 같음)

- 1) 「아동복지법」 제17조(금지행위)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3.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
 5.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(「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)
 6. 자신의 보호·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·양육·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

<u><신 설></u>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<u>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</u> 대해서는 「아동복지법」 제17조제3호,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.	③ ~ ⑥ (생 략) ⑦ ----- -----<u>학생생활지도와 제3항에 따른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에</u>----- ----- ----- -----.	③ ~ ⑥ (개정안과 같음) <u><삭 제></u>
③ (생 략)	② (현행 제3항과 같음)	② (개정안과 같음)
<u><신 설></u>	제20조의4(개별학생교육지원) ① ~ ⑥ (생 략)	제20조의4(개별학생교육지원) ① ~ ⑥ (개정안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⑦ <u>학교의 장과 교원의 정당한 개별학생교육지원에</u> 대해서는 「아동복지법」 제17조제3호,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.	<u><삭 제></u>
<u><신 설></u>	⑧ <u>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매년 개별학생교육지원 운영실태를 조사하고, 제6항에 따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</u>	⑦ (개정안 제8항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⑨ 제1항부터 제8항까	⑧ 제1항부터 제7항까

	<u>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별학생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 <u><신 설></u>	<u>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별학생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 <u>제20조의5(「아동복지법」의 적용 배제) 학교의 장과 교원의 다음 각호에 따른 정당한 행위는 「아동복지법」 제17조제3호,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.</u> <u>1.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학생생활지도</u> <u>2.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</u> <u>3. 개별학생교육지원</u>
--	---	--

2. 결격사유 근거 조문의 인용 정비 및 당연퇴직 사유 확인 목적 구체화 등 (안 제31조의3)

개정안 제31조의3은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과 그 후보자가 당연퇴직 사유 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찰관서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를 “「국

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호”로 규정하고 있는데, 이는 결격사유 및 당연 퇴직 사유의 근거규정인 이 법 제31조의2가 요건으로 인용하고 있는 조항에 해당하므로²⁾, 이 법 개정에 따른 결격사유의 변경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결격사유의 요건은 그 근거규정인 제31조의2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았음.

또한 안 제31조의3제2항은 현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자가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학교의 장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, 당연퇴직 사유가 새롭게 발생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범죄경력 등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그 목적을 구체화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.

아울러 유사 입법례를 고려하여 절차 등 세부사항은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등 일부 자구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음.³⁾

현 행	개 정 안	수정의견
<신 설>	제31조의3(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등 조회) ①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하여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	제31조의3(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등 조회) ①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하여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

2)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31조의2(결격사유) ①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.

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.

3) 「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」 제13조(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) ②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·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의 절차·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	<u>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</u> ② <u>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 호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</u> ③ <u>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 등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과 그 후보자의 범죄경력 등 요청 받은 자료를 확인하여 회신하여야 한다.</u> ④ <u>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제2항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, 해당 위원은 당연히 퇴직한다.</u>	<u>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</u> ② <u>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제31조의 2제2항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가 새로이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</u> ③ <u>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 등의 조회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 등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</u> ④ <u>(개정안과 같음)</u>
--	---	--

	<신 설>	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 등 조회 요청의 절차·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-	-------	--

3. 시행일 수정 (안 부칙)

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을 시행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18조의5(위기학생에 대한 상담 등 지원), 제20조의2(긴급상황에서 교원의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), 제20조의4(개별학생교육지원) 및 제20조의5(「아동복지법」의 적용 배제)의 경우 세부적인 절차 등을 규정할 하위법령 등을 수립하는데 시간이 소요되고, 학교 행정의 특성상 학년도⁴⁾가 시작하는 시기에 예산 교부 및 인력 지원 등이 이루어지므로 이러한 지원이 수반될 신설 제도의 개시 시점을 학년도와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는 교육부의 의견이 있었음.

이에 따라 교육부와 협의하여 동 개정규정들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학년도부터 시행하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함.

개 정 안	수정의견
부 칙	부 칙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	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8조의5, 제20조의2, 제20조의4 및 제20조의5의 개

4)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4조(수업 등) ①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.

	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학년도부터 시행한다.
--	--

그 밖에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, 사용되지 않는 약칭을 삭제(안 제9조제2항 및 안 제18조의5제4항)하는 등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으며, 자세한 내용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III. 관계기관 의견

행정안전부는 안 제19조의2에서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정부 인력운영을 경직화할 우려가 있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.

이와 관련하여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는 원칙을 유지하되, ② 전문상담교사와 전문상담순회교사를 중복으로 배치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를 배제하기 위하여 “전문상담교사를 두지 아니”한 경우에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두도록 명확히 하고, ③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두는 학교의 규모를 시행령으로 위임한 규정은 현행법 제19조의2제2항5)에 이미 전문상담순회교사의 정원·배치 기준에 대한 위임조항이 있다는 점과 정원관리 부담 등을 고려하여 “학

5) 제19조의2(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등) 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거나 시·도 교육행정기관에 「교육공무원법」 제22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둔다.

② 제1항의 전문상담순회교사의 정원·배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교 규모 등을 고려”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합의함.

현행	개정안	교육부·행정안전부 합의안
제19조의2(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등) 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거나 시·도 교육행정기관에 「교육공무원법」 제22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둔다.	제19조의2(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등) 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둔다. 다만, 시·도 교육행정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 학교를 담당하는 「교육공무원법」 제22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둘 수 있다.	제19조의2(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등) 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둔다. 다만, 학교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지 아니하고 시·도 교육행정기관에 「교육공무원법」 제22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두어 지원하게 할 수 있다.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	② (개정안과 같음)

기획재정부는 안 제20조의4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별학생교육지원에 필요한 경비 및 인력을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교육정책의 우선 순위 등에 따른 예산 편성·운용상 자율성을 제약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.

이에 대하여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개별학생교육지원에 필요한 경비, 인력 등의 지원 주체를 교육감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합의함.

현행	개정안	교육부·기획재정부 합의안
<신설>	제20조의4(개별학생교육지원) ① ~ ⑤ (생략)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	제20조의4(개별학생교육지원) ① ~ ⑤ (개정안과 같음) ⑥ 교육감은 개별학생교육지

<u>개별학생교육지원에 필요한 경비 및 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.</u> ⑦ (생 략) ⑧ <u>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</u> 매년 개별학생교육지원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, 제6항에 따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 ⑨ (생 략)	<u>원에 필요한 경비 및 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.</u> ⑦ (개정안과 같음) ⑧ <u>교육감은</u> 매년 개별학생 교육지원 운영실태를 조사하고, 제6항에 따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 ⑨ (개정안과 같음)
---	---

(전문위원 이 화 실)